

**2026년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기관 공모 계획**

□ 공모개요

○ 사업명: 2026년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

○ 사업기간: 선정 시 ~ 2026. 12.

○ 훈련분야

- 주요산업(의료기기, 바이오 등), 신산업(미래차, 반도체 등) 분야

- ▶ 주요산업 : 의료기기, 바이오 등
- ▶ 신산업 : 미래차, 반도체 등

○ 훈련대상: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의 구직자

- ▶ **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(청년층, 중장년층 등)**
  - \* 현재 실업자이며 구직활동 중인 자
  - \* 대학교 졸업예정자 : 4년제(4학년 1학기 이수), 2년제(2학년 1학기 이수)
  - \*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(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)
  - \* 임시직, 일용직 근로자, 퇴직예정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
  - \*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·전직 희망 소상공인(1인 자영업자)
- ▶ **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훈련 참여 배제**
  - \* 단, 채용약정기업의 직업훈련 요청으로 약정기업에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준 1개월 이내의 근로자에 해당하며, 훈련기관이 정한 훈련과정에 전부 참여할 수 있을 경우 훈련 참여 가능(고용보험 가입 증명 등 증빙 제출 필요)
- ▶ **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**
  - \* 예외 : 퇴사를 이미 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 처리 기간에 있는 자, 가족요양보호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
- ▶ **유사 인력양성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**
  - \* 훈련생 모집 공고 마감일까지 유사 인력양성사업 참여 포기 시 교육훈련 참여 가능
- ▶ **훈련 참여자는 구직신청(워크넷)과 함께 강원일자리정보망 등록(필수)**
  - \* 실업자DB 구축을 통한 경제진흥원 사업 사후 지원, 워크넷 기등록자 제외

- 지원내용: 과정별 120시간 이상 채용예정자 과정의 훈련비용 지원
- 공고방법: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, 강원지역인자위 홈페이지 공고
- 신청자격(직업훈련기관)
  - 선정 분야의 직업훈련 교육이 가능한 우수한 훈련기관
  - 선정 분야 직업훈련 후 채용 약정기업의 취업 연계가 가능한 훈련기관
  - 신청 가능 기관

- ▶ 『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』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
- ▶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
- ▶ 『평생교육법』에 의한 평생교육시설
- ▶ 『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
- ▶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
- ▶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- ▶ 인력양성 등 고용지원사업의 경험이 있는 사업주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
- ▶ 기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(출자 출연기관 등)

- 지정 우대기관 및 시설

- ▶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 시설
- ▶ 기업체 인력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등 전문 직업훈련상담원을 고용한 훈련기관
- ▶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경험이 있는 훈련시설로 유사 사업으로 70% 이상 취업률 실적(고용보험, 취업증명서 등)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

- 지정 제외 대상

- ▶ 훈련비 부담 청구 및 취업률 허위 보고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의하여 위탁계약 해지, 위탁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기관이나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해지 또는 제한 조치 중인 기관
- ▶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이 적정하지 않음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

- 공모기간: 2026. 2. 11.(수) ~ 3. 11.(수)
- 접수기간: 2026. 3. 9.(월) ~ 3. 11.(수), 15시까지
- 접수방법: 우편 및 방문 접수 \*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  - 접수처: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(☎ 033-256-9547)  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0(낙원동, 다나빌딩 4층)
- 제출서류: 2026년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훈련계획 관련 서류
  -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직업훈련과정 승인신청서(서식1) 1부.
  -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직업훈련 운영계획 요약서(서식2) 1부.
  -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직업훈련 실시계획서(서식3) 1부.
    - 훈련 장비현황 1부(관련 증빙서류 첨부).
    - 훈련 교과과정 내역 1부(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 포함).
    - 훈련교사 현황 1부(관련증빙 서류 첨부).
    - 예산현황 1부.
  -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신규채용 협약(약정)서(서식4) 1부.
  - 훈련계획 관련 서류 서식 순서에 따라 제본 후, 10부 제출(간이제본 가능, 파일 USB 별도제출)
    - ※ 훈련계획 파일명 : “2026\_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\_훈련 분야\_기관명”
- 선정 및 통보
  - 선정방법: 훈련계획 심사위원회의 훈련기관·과정 심사 후 결정
  - 결과통보: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및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기관 개별 통보
- 훈련계획 심사위원회 구성(별도 계획 수립)
  - 심사대상: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참여 교육·훈련기관

○ 선정분야

구 분	주요내용
훈련분야	■ 주요산업(의료기기, 바이오 등), 신산업(미래차, 반도체 등) 분야
훈련과정	■ 훈련분야에 해당하는 도내 주요산업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교육, 기술교육 등
훈련인원	■ 전체 60명(훈련과정별 15명 내외) ※ 과정별 신청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
훈련비용	■ 과정별 65,000천원 한도 ※ 과정별 신청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
훈련시간	■ 120시간 이상(훈련과정별)

- ※ 훈련분야 및 인원은 일자리 현안에 따른 수요변화 발생 시 변경 가능
- ※ 훈련계획 수립 내용(훈련시간, 수준, 재료비 편성 등)에 따라 세부 훈련비 심사 시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후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한도금액 및 훈련비용 조정 가능
- ※ 훈련시간은 1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8시간 이하로 편성

○ 심사기준

- ‘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’ 사업계획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구성된 심사표에 의한 평가
- (선정평가) 사업 운영기관 적정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 수행역량, 훈련 인프라 적정성, 훈련 수료생에 대한 취업연계 계획 등을 세부 배점에 따라 항목별 심사위원 점수 산정을 통한 평가
-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 심사지표 내용에 따라 위원별 평가/채점 후 점수 합계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※ 단, 평균점수 60점 미만의 훈련기관은 선정에서 제외

○ 심사방법

-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계획서 심사위원회 위원 서면 검토
- 훈련계획서 서면 검토 후, 심사평가 채점표의 세부 심사지표에 따른 훈련기관 인터뷰 진행을 통해 훈련기관(과정) 적정성 심사
- 전체 훈련 교과내용, 참여 교강사 등 훈련계획 설계가 미흡한 경우 계획서 내용 조정 요청 가능
- 심사위원의 훈련계획서 보완요청 발생 시 보완사항 안내 후 조건부 훈련 계획 승인 가능

○ 심사위원 구성

- 자격요건: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전문가

※ 실무경력 3년 이상, 관련 분야 석·박사 학위 소지자, 관련 분야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로 1년 이상 재직자 등

- 구성인원: 4인(심사위원장 포함) 내외 구성

※ 심사위원회: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전문가를 포함한 4인 내외 구성,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심사기준 준용

□ 향후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

붙임 :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사업비 산정 기준

[붙임]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사업비 산정 기준

□ 훈련기관 훈련비 산정

○ 사업비 편성

항목	세부항목	편성기준
인건비 (20%)	인건비	-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(총 사업비의 20% 이내, 3명 이내) ※ 복리후생비용(복지포인트 등)은 편성 불가 ※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 외 항목으로 별도 편성 불가
직접 사업비 (65% 이상)	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	-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-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·보수비
	재료비	- 훈련 등 필요한 실습 재료비
	연계활동비	- 훈련사업 운영 관련 행사(간담회, 현장실습 등)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 비용(외부 전문가 수당, 강연료 등)
	훈련수당	- 훈련생 수당(훈련수료 시 1회 30만원 지급)
	운영지원비	- 훈련과정에 필요한 문구비, 교재비, 다과비 등
	숙식비	-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비, 식비에 한하여 편성
	강사료 (기타 인건비)	- 전문인력 강의 비용
간접 사업비 (15% 이하)	여비	- 참여인력 등의 출장비(공무원 여비규정 준용)
	사업운영비	-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- 인쇄비, 훈련생 재해보험, 공공요금 등 - 기타 사업운영기관의 공통 운영 경비로 도비보조 사업비의 3%이내(최대 1천만 원) 계상 가능 ※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(임차료, 공공요금 등)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
	고용부담금	- 참여인력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(인건비 편성 금액 고려 후 산정)
	홍보비	- 사업 홍보물,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비용 ※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품 제작은 불가

○ 훈련생 숙식비 등(훈련기관에 지급)

- 숙식비 : 1일 평균 6시간 이상인 경우(단, 6시간 미만일 경우 1식만 제공)

다과비	식비	숙박비
1일 5,000원	1일 2식(1식당 9,000원)	1일 35,000원(1인 기준)

※ 공휴일 등 훈련이 없는 날은 숙식비를 지급하지 않음, 단, 1일 6시간 미만 과정 중  
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숙식비 지급 가능(정산 시 일자별 증빙 필요)

○ 훈련수당

구 분	세부 산정 기준
참여자 훈련수당	- 훈련과정 수료 시(전체 교육시간 80% 이상 이수) 지급 - 120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한해 30만원 1회 지급

○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 기준

구 분	세부 산정 기준
운영기관에 소속된 자	- 급여 총액(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포함) × 참여율 ※ 참여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※ (예시) 인건비 지원 가능 기간 : 훈련 운영 준비기간(2개월 이내) + 훈련과정 운영기간 + 취업연계 지원기간(3개월 이내)

□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기준

소속	책 임 급	선 임 급	원 급	기술기능직
기업 · 기관 · 단체	· 학사학위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·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·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·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·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의사 등 전문 직종 실무경력 5년 이상	· 학사학위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·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·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· 해당분야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·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	· 해당분야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·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(고졸 이상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 등)	· 책임급, 선임급,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
대학	교수 이상	전임강사 이상	박사과정 재학생 이상	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
국공립 연구기관	4급이상 직원	5급이상 직원	9급이상 직원	기능직

※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하는 기관

□ 교육·훈련 강사료, 위원수당, 컨설팅 수당 지급 기준

구분	지급 기준		지급액
원고료	지급 불가(강사료에 포함)		
강사료 (1일 4시간 한도)	1급	· 공공기관장, 저명인사, 대학총장, 국회의원 등	(시간당) 200,000원 이하
	2급	· 책임급(변호사, 교수 등)	(시간당) 175,000원 이하
	3급	· 선임급(대학강사 등)	(시간당) 150,000원 이하
	4급	· 원급 이하(참여인력 제외)	(시간당) 125,000원 이하
	보조 강사		(시간당) 25,000원 이하
심사 수당	내용 심사수당		1부 당 2만 원
	발표 심사수당		시간 당 6만 원
회의 수당	내부 참여인력이 위원으로 참여 시 지급하지 않음		100,000원/2시간 미만 150,000원/2시간 이상
컨설팅 수당	대면 컨설팅 시에만 지급 (유선상담은 컨설팅으로 미인정)		기본(2시간 기준): 200,000원 2시간 초과 시: 50,000원 추가 * 최대금액: 250,000원

※ 원거리 회의 및 훈련 장소의 경우 교통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(증빙 첨부)

- 버스비 기준으로 지급, 철도를 이용하였을 경우 운임 실비 지급

※ 정규 훈련과정 이외에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

※ 회의 수당과 관련 안전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

※ 강사료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되, 4시간 초과시에는 50%만 인정

예) "A"(3급, 시간당 150,000원 지급시)라는 강사가 하루 8시간 강의 시 지급강사료는 900,000원

-  $(150,000원 \times 4시간) + (150,000원 \times 4시간 \times 50\%) = 900,000원$

※ 강사료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: 학위 증명서, 경력 증명서, 관련 자격증 등

- 강사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 및 프로필 등은 인정불가

※ 보조강사료 지출 시, 훈련일지에 보조강사 역할 명확히 제시

※ 사업수행기관의 내부강사는 강의 및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

※ 심사수당은 내부 참여인력이 참여 시 지급하지 않으며, 내용 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

※ 심사수당은 위탁기관의 사업 선정심사(심사위원회), 평가(사업 평가위원회) 등의 업무 추진 시에 적용

<준용규정>

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「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을 준용하고 강원지역인자위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지출 필요